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645번
- 제안자 : 서운기 의원 외 42명
- 제안일 : 2020년 7월 13일
- 회부일 : 2020년 7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료 감면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7.17. ~ 7.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등록 청소년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u>장애인등록 청소년</u></p> <p>3.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u>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이하 ‘영어창의마을’)’은 총 3개소(수유, 풍납, 관악)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단체입소와 자유학기제 시행 중인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단체입소 시 참가비와 학생수송 차량운행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입·퇴소를 지원하고 있음.

○ 금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3개소 모두 각각 다른 시설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영어·창의마을 수유·풍납·관악캠프 휴관(2.24~)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코로나 19 격리시설 지정·운영(3.4~6.23)

〈 서울 영어·창의마을 기능전환 추진 〉

- 수유영어마을 : 인재개발원 이전 착공(2023년 예정) 전까지 영어마을로 한시적 운영
- 풍납창의마을 : 2021.6월까지 운영 후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로 조성(문화본부)
- 관악영어마을 : 인생문화회관(평생교육국)+청소년 창업체험시설(경제정책실) 검토
- ▶ 낙성 창업벤처밸리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2019.12~2020.8) 결과 반영 검토

〈 서울영어창의마을 캠프별 현황 〉

구 분		풍납캠프	수유캠프	관악캠프
소재지		송파구 풍성로14길 45	강북구 삼각산로 43	관악구 낙성대로 70
면적	부지	16,733㎡	64,982㎡	20,391㎡
	건물	13,260㎡ (지하1층, 지상5층)	12,431㎡ (지하1층, 지상3층)	7,040㎡ (지하1층, 지상3층)
개관일		2004.12.7	2006.3.27	2010.3.30
조성비		121억원	367억원	308억원
수용인원		450명	450명	300명

○ 영어창의마을은 최근 3년간 13만 7천여명 가량이 이용했으며, 이중 20.1%(27,575명)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감면혜택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 청소년은 전체 이용자 대비 0.2%(최근 3년 합계 249명) 규모임.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입소현황 〉

(단위:명)

구 분	합계	2020년7월	2019년	2018년
계	136,920	2,756	61,847	72,317
수유	57,509	0	24,727	32,782
관악	49,901	2,491	24,416	22,994
풍납	29,510	265	12,704	16,541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장애인이용자 현황 〉 (단위:명)

구 분	합계	2020년7월	2019년	2018년
전체이용자	136,920	2,756	61,847	72,317
사배층이용자 (전체이용자 대비 비율)	27,575 (20.1%)	664 (24.1%)	12,311 (19.9%)	14,600 (20.2%)
장애인이용자 (전체이용자 대비 비율)	249 (0.18%)	2 (0.07%)	153 (0.25%)	94 (0.13%)
수유	59	0	29	30
관악	154	2	115	37
풍납	36	0	9	27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소현황 〉 (단위:명)

구 분	합계	2020년7월	2019년	2018년
전체이용자	136,920	2,756	61,847	72,317
사배층이용자 (전체이용자 대비 비율)	27,575 (20.1%)	664 (24.0%)	12,311 (19.9%)	14,600 (20.2%)
수유	9,574	0	4,017	5,557
관악	8,432	411	4,419	3,602
풍납	9,569	253	3,875	5,441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20.2.24~) 중이며, 수유 영어창의마을은 금년 3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운영되었음.

-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영어창의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인 청소년, 장애인등록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구 분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숙 박	정 규 반	5박 6일	340,000원 이내	개인·단체
		4박 5일	16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박 3일	96,000원 이내	개인·단체
	특 별 반	5박 6일	4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방학캠프	12박 13일	800,000원 이내	개인·단체
		9박 10일	6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주 말 반	1박 2일	120,000원 이내	개인·단체	
비숙박	방 과 후	1개월	3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당 일 반	1일	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정규반 (1일 6시간 기준)	5일	14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3일	9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일	7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② 시장은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 등록 청소년만 영어창의마을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및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영어창의마을의 시설의 특성 및 보호자의 교육참여 여부, 보호자의 범위, 이용료의 부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4개의 공공시설 이용료에 관련된 4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영어창의마을이 문화시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영어창의마을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내용(53p발체) 〉

〈표 3-35〉 장애인 문화권 제약 관련 자치법규 및 개정(안)

연번	자치법규	관련 조항	개정(안)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부산 및 아용계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이용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키노 소지사·토요일교외 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하는 보호대상아동	제14조(이용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 장애인복지법 」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2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0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3.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제0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3. 「 장애인복지법 」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2.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2. 「 장애인복지법 」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4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 장애인복지법 」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권고 대상 중 한강공원, 시립미술관, 시립과학관의 이용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와 유사한 개념이나, 영어창의마을은 평생교육시설이며, 영어창의마을의 이용료는 강습료, 수업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이는데, 인권위원회의 시설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영어창의마을은 수업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수업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직접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보호자의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영어창의마을은 비숙박·숙박프로그램 모두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 청소년의 보호자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영어창의마을의 이용료 징수기준

- 영어· 창의마을 이용료 징수기준은 본 조례 별표 2로 규정되어 있음.
- 2006년 조례 및 고시로 이용료 기준을 결정한 이후, 2016년 2월 정규반 이용료만 1회 상향조정(고시)하고, 정규 외 프로그램 이용료는 14년간 동결하고 있음.
- 조례· 고시로 이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난이도, 심화도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가적용은 어려움.
- 서울영어· 창의마을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례범위내 이용료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고시공고 6.10)을 추진하였음(적용시기 '21.1.1~시행예정)
→ 대상: 5개 프로그램(정규반 숙박형 2개, 정규반 통학형, 방과후, 주말반)

○ 둘째, 이용료를 감면받는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 각 법령은 보호자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청소년·아동 관련 법령에서는 후견인·친권자 등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장애인, 청소년, 아동 관련 법령의 보호자에 대한 정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5호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 :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감면대상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를, 본 개정안은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과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법령의 부양하는 자와 본 개정안의 보호자(보호·양육하는 자)는 사실상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자인 동시에 동행을 해야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소목적이 장애인 청소년 보호 및 편의도모가 아닌 이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이용료 감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자격이 없더라도, ‘장애인’ 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는 자’ 의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셋째, 장애인등록 청소년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면제범위와 관련하여

-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의 주요내용(2019.7.1.시행) 〉

□ 「장애인 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법 제32조)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 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별표2)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안 제2조, 별표1 등)

- 본 개정안은 장애인등록 청소년의 장애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어·창의교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감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감면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영어창의마을이 관람 또는 입장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이 아닌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업료 등의 의미로 이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얻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등록 청소년의 이용편의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명시적으로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